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심 사 보 고 서

2026. 9.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6년 6월 12일, 윤건영의원 등 10인

나. 회부일자: 2026년 7월 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38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전체회의(2026. 8. 24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,
소위원회부

제438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6. 8. 26.) 상정, 축조심사, 의결(원
안가결)

제439회 국회(정기회)

제1차 행정안전위원회(2026.9.1.) 상정, 소위심사보고, 축조심사, 찬
반토론, 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윤건영의원)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.

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2조의2 등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생략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음

5.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이해식)

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
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, 원안의결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8. 법제사법위원회 체계·자구심사 내용

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·자구 심사를 거쳤음.

[붙임]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
률안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 중 “광역시장”을 “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”으로, “특별시·광역시”를 각각 “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”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광역시장”을 “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광역시”를 “통합특별시·광역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의2(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) 이 법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에 관하여는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 또는 “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</u> ”는 “교육감”으로, “ 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·부지사</u> (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·부지사를 말한다)”는 “ 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</u> (부교육감이 2명일 때에는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)”으로, “행정안전부장관”·“주무기관의 장”은 “교육부장관”으로, “행정안전부”는 “교육부”로 각각 본다.	제2조의2(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) ----- ----- ----- <u>--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--</u> ----- ----- <u>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</u> ----- ----- ----- <u>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</u> ----- ----- ----- <u>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</u> ----- ----- -----.
제5조(출자·출연 기관의 지정·고시 등)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	제5조(출자·출연 기관의 지정·고시 등) ----- -----

에 주무기관의 장(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지방자치단체의 장[출자·출연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·광역시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나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말한다. 이하 같다]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·출연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, 지정을 해제하거나,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. 다만,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·출연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, 지정을 해제하거나,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.

1. · 2. (생략)

제6조(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
위원회) ① · ② (생략)

통합

특별시장 · 광역시장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
위원회) ① . ② (현행과 같
음)

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·<u>광역시</u>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·부지사(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·부지사를 말한다)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의 부시장·부군수·부구청장이 된다. ④ · ⑤ (생략)	③ ----- -----<u>통합특별시·광역시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---	--